발간등록번호

74-4500000-000126-01

# 공주시 옥외광고물 표준 가이드라인

Standard Guidelines of Outdoor Advertising





# 공주시 옥외광고물 표준가이드라인



# 목 차

# 1. 사업개요

- 1-1 사언모저
- 1-2. 사업내용 및 범위

# 2. 현황분석

- 2-1. 공주시 옥외광고물 현황 및 여건분석
- 2-2. 공주시 옥외광고물 개선방향

# 3. 옥외광고물 방향제시

- 3-1. 옥외광고물 기본방향
- 3-2. 옥외광고물 권역구분
- 3-3. 정비시범구역 및 특정구역 지정 제시

# 4. 옥외광고물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 4-1. 광고 유형별 가이드라인 및 디자인
- 4-2. 한옥의 간판 가이드라인
- 4-3. 광고물 심의기준 및 제크리스트

# 5. 사후 관리방안

5-1 표주가이드라인 사후 관리방인

# 1.사업개요

# 1-1사업목적

공주시 옥외광고물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 계획의 목표는 각 지역에 설치되어있는 옥외광고물들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권역별(신시가지권역, 구도심권역, 역사문화권역, 읍·면 중심지 권역) 기본계획 및 세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주시만의 특색과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기본 방향 및 원칙을 제시하기 위함





공주시의 전통을 살린 독창적이고 가독성이 용이한 간판과 파사드 개선으로 도심환경 활성화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개선

침체된 거리활성화	·무질서한 옥외광고물 철거 및 보도, 차도의 환경개선 ·보행자의 편의를 고려한 공공시설물의 계획
거리의 정체성과	·거리의 정체성을 살리고 보행 가로 환경 개선
기능회복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가로 공간 확보
자연, 문화, 인간이	·자연을 바탕으로 사람이 행복한 거리 조성
조화를 이루는 거리	·걷고싶은 문화, 예술의 거리로 재탄생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건축물과 주변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테마거리 ·도시의 품격이 느껴지는 쾌적한 거리 조성

# 1-2사업내용

표준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의 유형별 크기, 형태, 색채 등 일반적 사항을 규정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공주시 전역에 통합적으로 적용해야 할 표준 디자인안과 현장 상황에 맞게 일부 변형 적용 가능한 디자인 개선안으로 구성됨

#### ▮주요내용

○ 디자인 가이드라인: 디자인, 형태, 색채, 배치 등의 일반적인 사항 규정

o 권역별 가이드라인: 공주시의 권역을 구분하여 특색에 맞게 적용해야 할 디자인 가이드라인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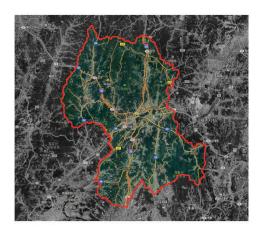
○ 유형별 가이드라인 : 사업 시행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간판 유형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규정

#### ▮세부내용

항 목	내 용
사례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및 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및 시사점 도출
현황분석	공주시 전역에 설치된 옥외광고물 현황 조사 및 분석
권역구분	각 권역별 상황과 특색에 맞는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신시가지권역 / 구도심권역 / 역사문화권역 / 읍·면 중심지 권역
광고유형	광고·간판 유형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벽면이용 간판 / 돌출형 간판 / 지주형 간판 / 창문이용 / 현수막 / 한옥용 간판

공주시 옥외광고물 표준가이드라인 활용방안 및 시범사업 계획 수립

## 1-3 사업범위 및 대상



#### ▮사업범위

공주시 전 행정구역 옥외광고물 표준가이드라인 디자인

#### ▋적용대상

공주시 전역에 위치하는 정보·광고매체 및 기타시설

- 공동주택 옥외광고물
- 상업·업무시설 옥외광고물
- 공공·공업건축물 옥외광고물
- 국도변 옥외광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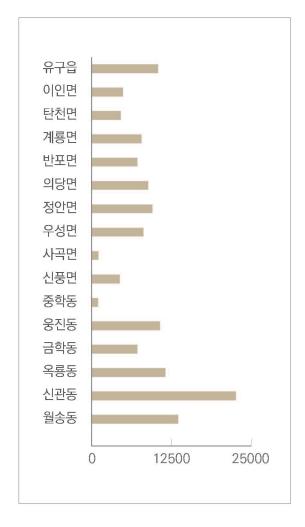
# 2.현황분석

# 2-1 공주시 옥외광고물 현황 및 여건분석

# 일반현황

- 인구 수 : 110,962명 - 세대 수 : 48,547세대 - 주택 수 : 55,247호





## ▮행정구역

면적	864.27Km²
임	1읍
면	9면
동	6동
리	248리
통	131통
반	1,930반

### ▮ 사업체 통계

이인면	174
탄천면	184
계룡면	415
반포면	592
의당면	276
정안면	340
우성면	285
사곡면	218
신풍면	127
중학동	941
웅진동	249
금학동	505
옥룡동	2063
신관동	1311
월송동	541
 공주시	8844

## 옥외광고물 현황

신시가지를 제외한 기존의 건축물들은 형태와 입면의 정형화된 이미지와 노후화로 인해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음 보행자의 중심으로 보기에 시각적인 면과 편의성, 외부공간 활용도가 낮아 역사도시의 아이덴티티를 바탕으로 한 가로경관 통합디자인 계획이 필요함 신축된 건물은 여전히 관료적인 형태와 관습적인 디자인을 취하고 있으며, 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중심공간으로 기능상실

## 여건분석

### ▮ 가로경관의 표정과 분위기

- 낙후된 경관으로 인한 획일적인 경관과 낙후된 경관으로 인해 지역의 정체성 부각이 미비
- 공주시의 대다수 구역 대로변의 경관이미지는 전반적으로 노후화 되어있는 옥외광고물과 파사드로 인해 경관적, 심미적, 미관적 특성이 저하
- 공주만의 문화적, 장소적 특성의 반영이 미흡한 실정













### ▋건물

- 노후화된 건물의 외관으로 인한 가로경관 이미지 저해

거리 전반적으로 건축물의 스카이라인이 불규칙하며, 노후된 건물이 혼합되어 하나의 일관된 아이덴티티 디자인 반영 필요. 특히 건축물 마감재와 광고부착물의 통합화, 일체화가 부족해 조형적, 시각적 부조화를 이루는 실정임



## ▮간판

- 국내·외 사례들을 분석하여 특성있고 간결한 사인 설치가 필요

과도한 정보로 인한 가독성 저하. 원색의 과다사용으로 거리경관 훼손, 규제없는 간판의 크기 및 위치선정으로 정보 인지의 시각적 충돌, 광고물의 계획 없는 설치로 인한 거리경관 저해, 광고물의 정보 전달력 부족



### ▮ 광고물 유형별 설치현황

- 효율성 없는 다양한 형태의 간판과 건축물을 고려하지 않은 광고물

가로형 간판 - 획일화 되지 않고 과도한 형태로 경관저하 ┃ 창문이용 광고물 - 건물의 개성과 이미지 저하 돌출형 간판 - 디자인 요소의 획일화로 인한 개성저하

기타 간판 – 무분별한 광고물 설치로 인한 거리 이미지 저하

공주시 옥외광고물 표준 가이드라인









### ▋ 경관 저해 요소

- 슬럼화를 가속화 시키는 가로경관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슬럼화, 관리주체의 무관심 등으로 거리 환경을 저해, 위험한 가로경관 시설물로 인한 안전보행의 어려움과 가로경관 이미지 훼손. 방치되는 폐자재나 쓰레기등으로 인한 도로의 기능 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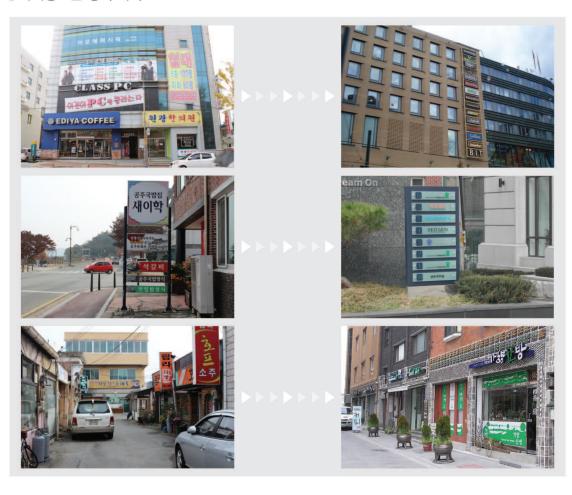
# 2-2 공주시 옥외광고물 개선방향

### ▋ 공주시 종합 경관 분석

- 가이드라인 없이 난무하는 광고물들로 건축물의 조형성이 전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무분별한 광고물들로 인해 돌출된 건축물의 조형감이 전혀 살아나지 못하는 실정
- 일정 가이드를 바탕으로 통합된 파사드나 경관디자인으로 정리 필요
- 각 권역별 특성에 적합한 가로경관 이미지 구현
- 가로에 산재된 위험요소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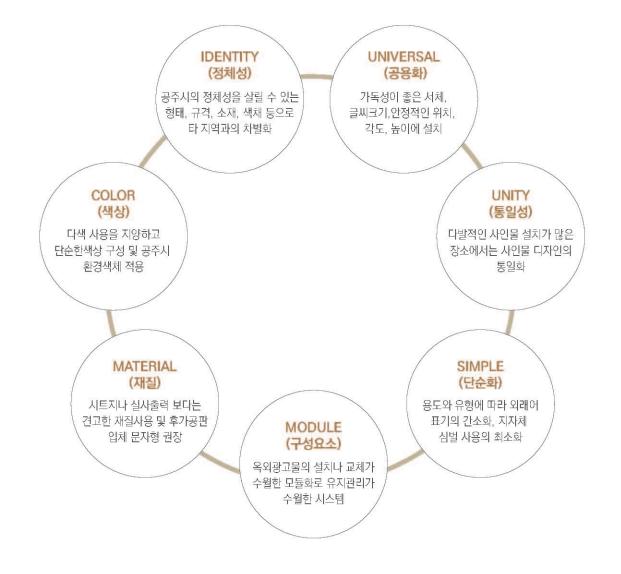
#### ▮옥외광고물 정비 예시



#### ▮ 디자인 기본구상

- 도시는 시대와 함께 변화하며 도시변화에 따라 사인물과 옥외광고물도 변화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옥외광고물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 기존 옥외광고물을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으로 각 유형별/권역별 옥외광고물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한 후 어떠한 디자인이 적합한 것인지 확인하여 전체 속에서 각 사인물이 유효하고 효율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상
- ㅇ공주시의 옥외광고물 디자인 기본방향을 일곱가지로 정리해서 반영

첫번째, IDENTITY (정체성) 공주시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형태, 규격, 소재, 생채 등으로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줌 두번째, UNIVERSAL (공용화) 가독성이 좋은 서체, 글씨크기, 안정적인 위치, 각도, 높이에 설치 하여야함 세번째, UNITY (통일성) 다발적인 사인물 설치가 많은 장소에소는 사인물의 디자인을 통일시켜야 함 네번째, SIMPLE (단순화) 용도와 유형에 따라 외래어 표기의 간소화, 지자체 심벌 사용의 최소화 다섯번째, MODULE (구성요소) 옥외광고물의 설치나 교체가 수월한 모듈화로 유지관리가 수월한 시스템 이여야 함 여섯번째, MATERIAL (재질) 시트지나 실사출력 보다는 견고한 재질사용 및 후가공판 입체 문자형을 권장 일곱번째, COLOR (색상) 다색 사용을 지양하고 단순한 색상 구성 및 공주시의 환경색체를 적용 하도록 규정



# 3.공주시 옥외광고물 방향제시

## 3-1옥외광고물 기본방향

#### ▮ 건축물의 조형성을 우선시하며 건축요소를 기준으로 설치함

건축물의 구조, 창문, 마감선 등을 기준으로하여 건축물의 조형요소와 충돌함이 없도록 함

#### ▮ 조형성과 시각적 포인트를 부각시켜 건축입면의 디자인 요소로 표현

입면의 여백을 확보하고 조형적 요소와 정보의 위계를 고려하여 시인성과 가독성 중심으로 디자인

## ▮ 면적총량제를 도입하여 색채, 소재, 규격 등의 과도함을 방지

▼ 간판의 점유면적 제한, 수량을 최소화하고 20%이상의 충분한 여백을 확보

#### ■ 효율성을 강조한 경제적인 디자인으로 지속적으로 유지 · 관리될 수 있도록 함

제작방식 및 구성요소를 표준화하여 정보내용의 교체가 용이한 디자인으로 설계

## ▮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통일성을 갖추도록 함

동일한 건축물의 옥외광고물은 통일된 형태와 규격으로 설치ㆍ배치

#### ▮ 자극적인 색채는 지양하고 많은 수의 색채사용을 제한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안정된 색채를 사용하고 고채도 원색은 강조 부분만 포인트 색으로 사용

#### ▮ 가로의 성격 및 위치적 특성을 스토리텔링하여 지역성을 표현

▋ 공주시의 특화거리, 읍면시가지의 특산물, 역사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

#### ▮ 일정구간의 광고물은 상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통합적으로 계획

▍특화거리 등 일정구간의 광고물은 상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통합적으로 계획

#### ▮ 보행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 설치를 금지

노상의 이동식 간판, 현수막 등 보험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을 금지

## ▮ 점멸LED, 광원이 노출되는 조명방식을 지양

건축물 입면외곽을 표현하는 라인조명, 점멸LED, 광원이 직접적으로 노출됨을 지양

# ▮ 옥외광고물 공통가이드라인

규정항목	지침내용
필수사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충청남도·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준수
	· 지속적으로 유지 · 관리될 수 있는 효율성을 강조한 경제적인 디자인 · 제작방식 및 구성요소를 표준화하여 정보내용의 교체가 용이한 디자인으로 설계
형태 / 구조	· 조형성과 시각적 포인트를 부각시켜 건축입면의 디자인 요소로 표현 · 조형적 요소와 정보 위계를 고려하여 시인성과 가독성 중심으로 디자인
	· 일정구간의 광고물은 상가 주민의 참여를 유도 · 특화거리 등 일정구간의 광고물은 상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통합적으로 계획
	· 보행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 설치 금지 · 노상의 이동식 간판, 현수막 등 보행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 금지
설치 / 배치	·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통일된 디자인으로 설치 · 동일한 건축물의 옥외광고물은 통일된 형태와 규격으로 설치 · 배치
	· 건축물의 조형성을 우선시하며 건축요소를 기준으로 설치 · 건축물의 구조, 창문, 마감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의 조형요소에 맞게 설치
	· 면적총량제를 도입하여 색채, 소재, 규격 등의 과도함 방지 · 간판의 점유면적 제한, 수량을 최소화하고 20% 이상의 충분한 여백 확보
재질 / 색채	· 부드럽고 안정된 색채를 사용하고 고채도 원색은 강조 부분만 포인트 색으로 사용 · 자극적인 색채는 지양하고 많은 수의 색채사용 제한
표기요소	· 공주시의 특화거리, 읍면시가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정체성 표현 · 가로의 성격 및 위치적 특성을 스토리텔링하여 지역성 표현

## 3-1옥외광고물 기본방향

#### ▮옥외광고물 기본색채계획

옥외광고물은 건물주의 입장에서 홍보의 주요한 수단이나 가로이용자의 입장에선 정보전달의 수단인 동시에 가로구성 요소의 한 부분임 자칫 화려한 색들로 넘쳐나는 광고물은 오히려 가시성을 떨어뜨려 경관을 훼손 함은 물론 시각적 공해로 전락해 건물주에게 손해가 되기도 함 그러므로 옥외광고물의 색채는 주변과의 조화를 먼저 고려해야 하며 가시성을 위해 화려한 색을 전면에 사용해서는 안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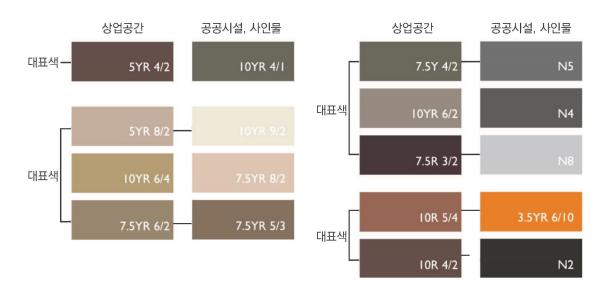
#### ▮기본지침

- ㆍ 광고물의 색은 눈에 띄도록 하되 주위와 조화를 고려하여 고채도, 고명도색 전체면적에 사용하는 것은 금함
- · 교통표지등 공공목적의 근처에 정보내용을 혼돈시키는 배색의 광고물 설치를 금함
- · 바탕색의 경우
  - -대비배색으로 표기요소에 같은 계열의 저채도의 색을 사용해 전체적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주위와 대비
- · 기업 CI와 무채색의 조화
  - -기업의 CI를 이용한 광고물의 경우 CI색은 유지하되 배경색을 무채색으로 처리하여 가로의 통일감을 유지
- · 질감을 살린 소재색의 사용
  - -공주시는 명품도시로 조성되므로 광고물에 있어서 되도록 질감을 살린 소재색을 사용해 세련됨을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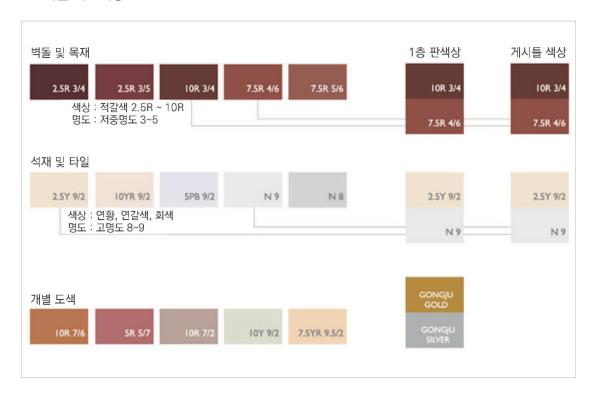
#### ▮ 공주 C.I 색상



#### ▮ 경관계획 색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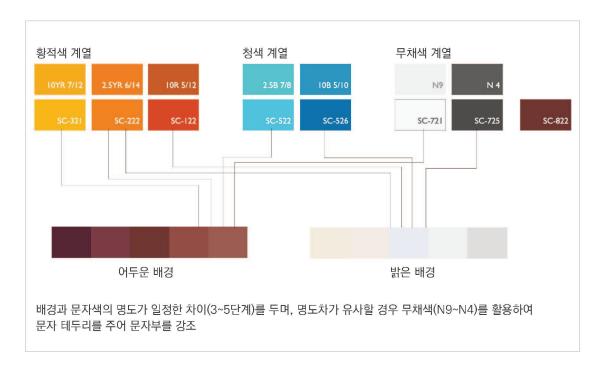


#### ▮ 건축물 외관색상



공주시 옥외광고물 표준 가이드라인

# ▮ 문자 색상/울트라시트 옥외용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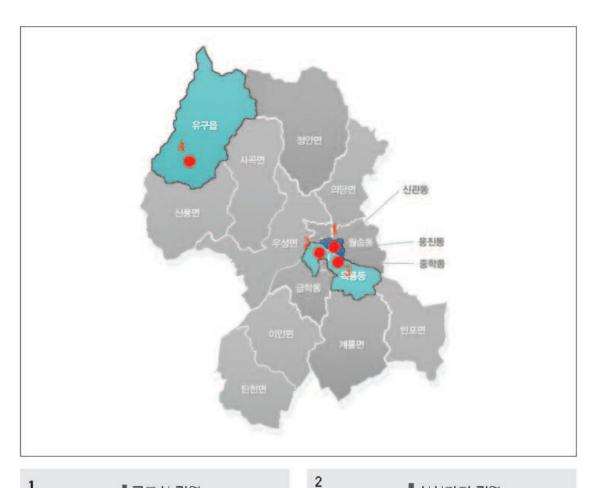


# 3-2옥외광고물 권역구분

### ▋권역설정

옥외광고물은 권역은 신시가지, 구도심, 역사·문화, 읍·면 중심지 등 4개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옥외광고물 권역별 가이드라인 기본 구상에 적용 하도록 함

공주시 옥외광고물 표준 가이드라인



#### 1 ▮ 구도심 권역

-위치:옥룡동 -일반현황

인 구:9788명 세대 수: 4426세대

# ■신시가지 권역

-위치:신관동

-일반현황

인 구:19536명 세대 수: 8143세대

#### 3 ▮ 역사·문화 권역

-위치: 웅진동 -일반현황

인 구:8763명 세대 수: 3771세대

#### 4 ▮읍·면 중심지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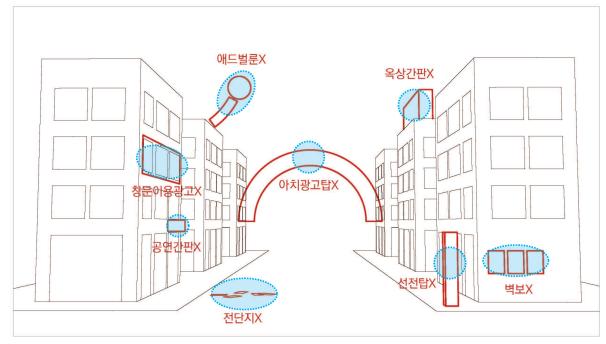
-위치:유구읍 -일반현황

인 구:8242명 세대 수: 3905세대

# 3-3정비시범구역 및 특정구역

### 특정구역

## ▮특정구역 옥외광고물 금지사항



- · 전단, 벽보, 애드벌룬, 선전탑, 아치광고물, 옥상간판(공익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외), 공연간판(건물부지내 표시하는 경우 제외) 설치 금지
- · 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 주간에도 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부속 설치물이 보이지 않게 설치
- · 기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지침을 준용
- · 특화거리내 노후화된 건축물 파사드 정비 및 건축물의 입면 개선 등과 함께 광고물정비를 통합적으로 시행
- · 무계획적인 신규, 추가설치 방지를 위한 특화거리 공동체를 운영
- · 특화가로별 개성이나 장소성 등 해당권역 및 가로축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

#### ▮특화거리 옥외광고물 예외사항









- · 특화거리내 거리 특성 및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일부구간 옥외광고물 규제를 완화하는 자유구역을 설정하여 예술 작품화
- · 조형적이고 예술성 있는 디자인으로 문화예술의 이미지로 특화
- · 입점 업소의 특성을 조형적으로 표현하여 특화거리내 건축물 입면의 디자인 요소로서 가로경관 이미지 증대
- 면적 총량제(입면 면적 비율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여 향후 예상되는 광고물 규모에 대한 경쟁구도 방지
- · 건축 외관과 설계, 창의적인 디자인, 입면 색채 등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계획

## 특정구역지정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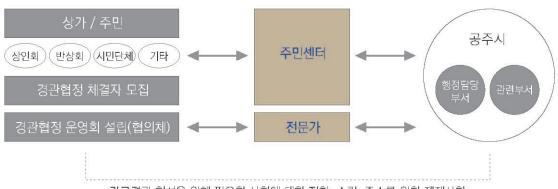
#### ▮업무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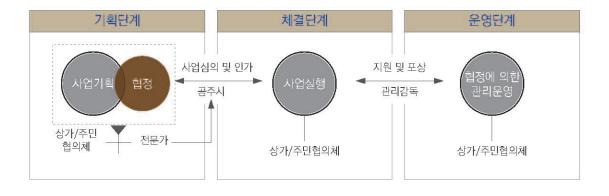
- · 특화거리의 개성을 표현하는 연출요소 중 하나로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 특화거리 및 매장 분위기에 맞는 외부공간 연출개념의 간판 디자인으로 평범한 간판형식에서 벗어나 업소를 상징할 수 있는 간결한 조형 이미지를 권장
- · 돌출간판, 서체, 색채, 소재 등 특화 가로별 특성을 반영한 공통적인 조형요소 및 일관된 테마전개를 통해 특화 가로의 일관된 장소성을 표현

#### ■주민협정

- · 공주시에서 선행된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갈등 해소 방안을 도출
- 협의체(공동체) 운영을 통해 상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실현되는 특화거리의 주인의식 고취
- · 향후 시민 만족도, 시행착오 및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유사사업시 활용



가로경관 형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침, 수립, 준수를 위한 제재사항 인센티브, 경관형성 비용 등의 내용 협의



# 특정구역

# 옥룡동\_국고개길



## ▮기본방향

- · 광고물의 차별화를 통한 거리의 정체성 구현을 목표
- · 광고물을 활용하여 지역 또는 거리의 특정테마를 연출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상품화
- · 테마에 따라 수량, 위치, 규격, 자재, 색상 등을 규제 혹은 완화
- · 특정 광고물의 종류를 규제 또는 완화하여 특화 가능

#### ■국고개길 현황



공주시 중동 국고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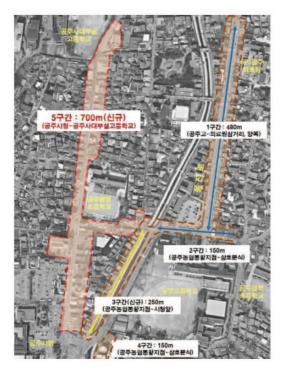






## 정비시범구역

## 정비시범구역



#### ▮구간

1구간: 공주고 ~ 의료원사거리

2구간: 공주고 앞 3구간: 제민천 1길 4구간: 제민천 2길 5구간: 봉황로 구간

#### ▮개요

웅진로 구간 및 제민천변 점포 대상의 간판개선사업에 활용되는 간판디자인 개발용역으로 활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설치기준 및 점포별 고품질 디지인 성과물 도출

####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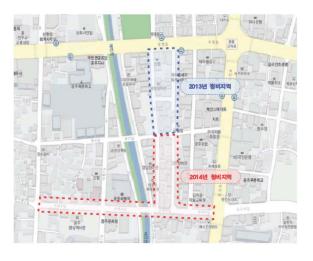
사업지원 점포에 가로형간판 1점, 돌출간판 1점 또는 소형돌출간판 1점을 제작,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되는 간판 디자인 및 제작규정 제시(옥외광고물 등 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관리조례 제4 조의 2) 자율관리구역에서는 광고물의 모양, 크기, 색깔, 표시 또는 설치방법을 주민의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 ■ 설치시안



# 정비시범구역

# 정비시범구역\_간판이 아름다운 먹자길 조성



- · 간판(가로형, 세로형, 돌출형) 디자인 및 설치
- · 건물 파사드 개선을 위한 색채디자인 및 도색
- · 경관조명 디자인 및 설치
- · 기타 거리 경관 향상을 위한 경관요소 디자인 및 시공

시 점 - 종 점	건물 수	업소 수
대성당인쇄사 ~ 현대부동산		
양반갈비찜 ~ 범진슈퍼	58	68
국기태권도 ~ 자연나라		

## ▮ 건축물 외장 마감 및 색채계획



### ▮ 간판 정비 현황



# 특정구역 지정안

#### 웅진동 백미고을길 / 금강공원길



유구읍\_중앙 1길



#### ▮기본방향

- · 역사문화의 중심지로 특정테마 연출
- · 한옥(전통건축물)이 많고 식당이 밀집해있어 특화된 거리 연출로 상품화 하여 관광객들의 관심 극대화
- · 일반화된 거리 보다는 지역특성을 살린 통일성 있는 테마 연출
- · 파사드정비와 소형돌출 간판을 활용한 거리 특성화 및 관광상품화 권장
- · 테마를 정하여 수량, 위치, 규격, 자재, 색상 등을 통일 권장
- · 특정 광고물의 종류를 규제 또는 완화하여 특화 가능

# 정비시범구역 지정안

### 신관동 번영 1로



옥룡동\_무령로



웅진로\_의료원 삼거리 ~ 금강교



반죽동\_감영길



#### ▮기본방향

- ㆍ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정비를 통한 거리 활성화가 필요
- · 학교가 밀집되어있고 차량과 보행자가 많은 지역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거리개선
- · 노후된 건축물과 광고물들의 정비와 통일성 있는 규제로 차분한 가로 분위기 조성
- · 불필요한 광고물들을 제한하고,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량과 규격의 제한
- · 웅진로 정비사업에 맞춰 조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비사업 진행

## 정비시범구역 및 특정구역 관련 법률 시행령

## 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 21조 (표시방법의 완화)

- ① 법 제3조제4항에서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 3. 너비가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제24조제1항제1호다목·사목 및 아목에 따른 지구·지역 등은 제외한다)
- 5.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 ② 제1항제5호의 지역에서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이 강화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만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⑤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절차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 ⑥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에서도 다음 각 호의 표시방법은 완화할 수 없다.
- 1. 제1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같은 조 제4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시기준
- 2. 제17조제4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

#### ▮ 제 28조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 ① 법 제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 3. 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변
- 4. 법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외에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 ② 시장등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거나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광고주·광고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7.6.〉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 ▮ 제 28조의2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 ① 법 제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역을 말한다.
- 1. 법 제3조제1항 각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지역
-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 ② 시·도지사는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옥외광고사업자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또는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하며,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등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1. 지정된 자유표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2.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사유
- 3. 자유표시구역 지정일
- ④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 4-1 광고유형별 가이드라인 및 디자인

# ▋ 벽면 이용 간판



규정항목	지침내용
기본원칙	<ul> <li>건축물의 입면특성 및 건축적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배치</li> <li>건축물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상호명을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 표기로 가독성 및 조화를 고려한다.</li> <li>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서체와 시각적 개방감을 고려한 여백 확보로 깨끗하고 정리된 가로 이미지를 연출한다.</li> </ul>
필수사항	<ul> <li>조형성과 시각적 포인트를 부각시켜 건축입면의 디자인 요소로 표현</li> <li>건물의 5층 이하에 설치</li> <li>조형적 요소와 정보 위계를 고려하여 시인성과 가독성 중심으로 디자인</li> <li>건축물의 조형성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도록 최소화하여 설치</li> </ul>
금지사항	<ul> <li>점포주택의 주거부분으로 쓰이는 해당 층에는 설치 금지</li> <li>건물의 주출입구 1층 상단 및 최상단에는 입체형으로 된 건물명을 제외한 광고물설치금지</li> <li>동일 층의 가로형 간판은 상/하 2줄로 표시금지(전화번호,체인점표시,인터넷주소,지점명 등 가로형 간판 높이 이내로 2줄 표시가능)</li> <li>간판에는 실물사진 표시금지</li> <li>둘 이상의 벽면을 연결하여 표시금지</li> <li>커튼월 형식의 유리로 된 벽면에는 판류형 설치 금지</li> <li>창문과 창문사이 벽면, 계단실 등 공동 사용 부분에 개별 업소의 간판표시를 금지</li> <li>보조간판, 현수막 등으로 가로형 간판의 중복설치를 금지</li> </ul>

규정항목	지침내용
수 량	· 업소당 1개(곡각지점 및 출입구가 앞뒤 도로에 접한 업소는 1개 추가) *곡각지점, 앞뒤도로 모두 접한 업소는 2개의 조건 중 1개 선택
형 및 규격	・ 간판 설치가 불가피한 곳은 벽면 마감 후 설치 ・ 프렌차이즈업소 간판크기가 가로 700mm, 세로 10m 초과할 경우 심의 허가 ・ 같은 층의 간판 높이 및 위치는 일치되게 정렬 ・ 가로의 폭이 10m를 초과하는 경우. 주변 경관, 건물의 외관, 디자인 요소의 이유로 1층의 간판을 분할하여 설치 할 수 있으며, 해당 간판의 총 면적의 범위 내에서 가능 (2개까지만 분할)*심의 허가  ◆ 조인트바형 ・ 가로너비: 전체 가로 폭의 80%이내   *해당 업소의 가로 폭 또는 창틀선 이내로 10m 이내 ・ 세로높이: 해당 업소의 총간 벽면 폭으로 하며 600mm 이내 ・ 두 께: 건물의 벽면으로부터 300mm 이내 ◆ 문자형 ・ 가로: 10m / 세로: 600mm / 두께 150mm 이내 ・ 로고: 600 x 600 두께 150 이내 (mm)  ◆ 소형 가로형(자유형태) ・ 2~3층에 한하여 소형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가로폭은 건물 가로영역의 60% 이내, 높이는 500mm 이하의 범위 ・ 인중간판제작업소 제작 (심의 허가 대상)
조 명	· 광원은 직접 노출시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매입하거나 커버를 씌워 사용 · 문자나 로고, 도형등의 부분에만 부분조명 사용 · 점멸방식은 사용 금지 (*권역에 따라 심의를 통하여 허가)
색 상	· 색상 활용은 업종 및 지역에 따라 개성있게 사용하되, 고체도의 원색 (채도 12~14인 적,노랑 계열)은 강조색 제한
보조표기 내용	· 전화번호, 홈페이지주소, 자격자 명, 업종의 외국어 표기 · 음시점 및 병원은 영문 표기를 정해진 규격에 따라 표기
주민참여	· 구획별 주민협의에 따라 조인트바의 색 및 위치를 통일하여 설치가능 · 총면적 기준으로 주민협의에 따라 자율적인 디자인 가능(2층 이상)

공주시 옥외광고물 표준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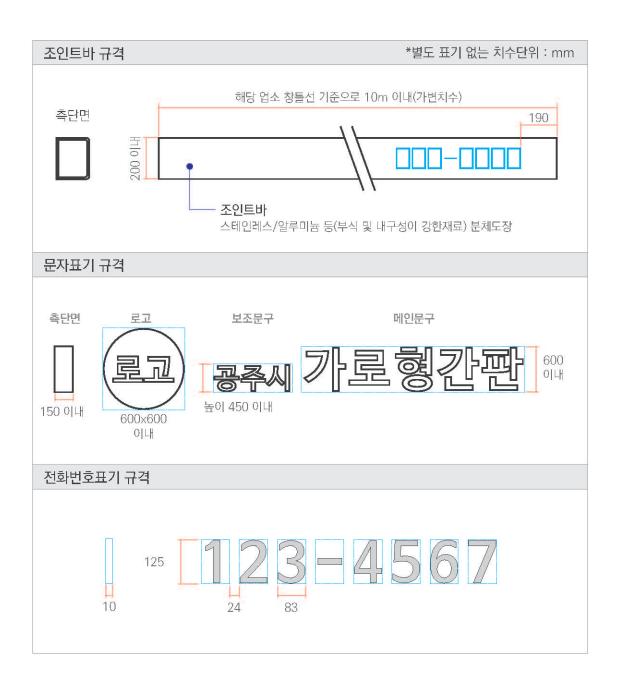
# 벽면 이용 간판

#### ▋설계지침

#### 사용서체

-공주시 사용서체 나눔바른고딕 외 프렌차이즈 전용 서체 및 캘리그라피





# 벽면 이용 간판

## ▋설치예시

\*별도 표기 없는 치수단위: mm

• 바 상단 타입



공주시 옥외광고물 표준 가이드라인





이바 중앙 타입







ㅇ바 절단 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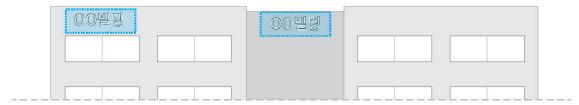






# 4-1 광고유형별 가이드라인 및 디자인

# ▮건물상단 벽면 이용 간판



규정항목	지침내용
대상	· 도로에 접한 면에 5층 이상 건물의 최상층 간판으로 건물명, 대표 업소면, 기관명 등을 기재
기본원칙	· 가독성과 미관을 고려한 서체로 건축물의 디자인 요소가 될 수 있도록 계획 · 건물명을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 표기와 충분한 여백 확보로 건물의 인지성 강화
필수사항	<ul> <li>· 건축물의 성격 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픽과 도안된 서체 사용 권장</li> <li>· 설치되는 건축물의 입면특성 및 건축적 요소를 기준으로 배치</li> <li>· 상징 도형이나 문자를 이용한 최소한의 표기로 건축물 입면의 차폐율 최소화</li> </ul>
금지사항	· 건축물 상단 및 옥상부에 설치되는 대형 판류형 간판 금지
수량	· 1개(상업지역 및 도로에 접한 면, 업소간판과 별도의 전면간판이 없는 기관 및 건물은 2개까지 허용/혼용가능)
형식 및 규격	<ul> <li>◆ 입체형</li> <li>· 가로너비: 건물의 가로크기의 1/2 이내</li> <li>· 세로높이: 최대 800mm 이내</li> <li>· 두 께: 건물 벽면으로부터 300m 이내</li> <li>◆ 대형상업건물 (*대형병원, 종합쇼핑몰, 호텔 등)</li> <li>· 가로너비: 건물의 가로크기의 1/2 이내</li> <li>· 세로높이: 최대 2m 이내</li> <li>· 두 께: 건물 벽면으로부터 300m 이내</li> <li>*종합상가의 경우, 상가명은 건물 상단 가로형 간판에 표시하고, 입점업소의 간판은 연립형 간판 사용</li> </ul>
조 명	· 입체형 글자 내부 및 간판 외부에 부분조명이나 간접조명 설치 권장
재질 / 색채	· 스테인리스 스틸 등을 고급재료의 사용과 구조적으로 안전한 재료 사용 · 건축물 마감재와 조화되도록 사용하며 친환경소재 권장

# 건물상단 벽면 이용 간판

## ▋설계지침

\*별도 표기 없는 치수단위: mm



공주시 옥외광고물 표준 가이드라인

# 4-1 광고유형별 가이드라인 및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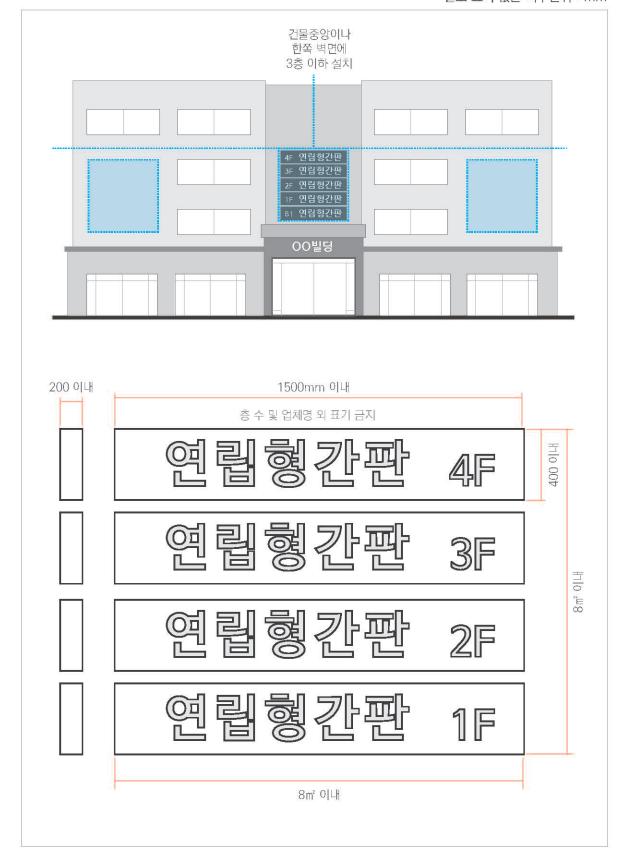
# ▮연립형 간판

규정항목	지침내용
기본원칙	<ul> <li>각 업소의 개성표현보다 통일감 위주의 형태와 규격으로 디자인</li> <li>업소변경, 추가설치를 고려한 모듈형 간판으로 디자인</li> <li>가독성 있는 서체와 여백 확보로 깨끗하고 정리된 이미지를 연출함</li> <li>부착되는 건축물, 주변간판, 거리 분위기와 조화로운 디자인으로 계획</li> </ul>
필수사항	· 각 업소의 광고물 구조는 형태 및 규모를 통일하여 설치 · 주변 간판과 상 · 하, 좌 · 우 위치 (높낮이)를 일치시키며 같은 건물내 간판들의 조명 사용여부 등을 통일시켜 일치감을 줌
금지사항	<ul> <li>지주형 간판이 설치된 업소는 설치 불가</li> <li>인증간판제작업소 제작(심의 허가 대상)</li> <li>네온사인, 점멸형 조명, 형광 / 야광도료, 야광도료 재료의 사용 금지</li> <li>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의 광고내용 (성명, 상호, 상표, 전화번호, 영업내용)과 관련 없는 내용, 실물 사진의 이미지 사용을 금지</li> <li>네온사인, 점멸형 옥외광고물, 형광도료, 야광도료, 유연성 원단 (플렉스)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사용을 금지함</li> <li>간판의 베이스판은 고광택 금속 재료의 사용 금지</li> </ul>
수량	<ul> <li>1개(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함. 4~7층 업소, 지하업소 또는 후발 입점 업소로 가로형 간판을 부착할 공간이 없는 경우)</li> <li>- 곡각지점에 추가설치 가능</li> </ul>
형식 및 규격	<ul> <li>· 곡각지점의 건축물에는 '¬'자 형태로 표시 가능</li> <li>· 창문이 없는 벽면을 이용하여 업소당 1개씩 연립으로 설치</li> <li>· 3층 이하 공동으로 사용하는 벽면으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곳에 설치</li> <li>· 총면적 8㎡ 이내</li> <li>· 1개 업소당 광고면적 0.6㎡ 이내</li> <li>· 규격: 가로 1500mm 이내 x 세로높이 400mm 이내 x 두께: 200mm 이내</li> <li>· 표시내용: 층 수, 업소의 상호 및 상징도형에 한해 표시 (*전화번호,업종,품목은 표시금지)</li> </ul>
조 명	· 광원은 직접 노출시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매입하거나 커버를 씌워 사용 · 문자나 로고, 도형등의 부분에만 부분조명 사용 · 점멸방식은 사용 금지 (*권역에 따라 심의를 통하여 허가)
주민참여	· 건물별 주민협의에 따라 통일된 패널색 지정과 면적분할 가능 · 총면적 기준으로 주민 협의에 따라 자율적인 디자인 가능

# 연립형 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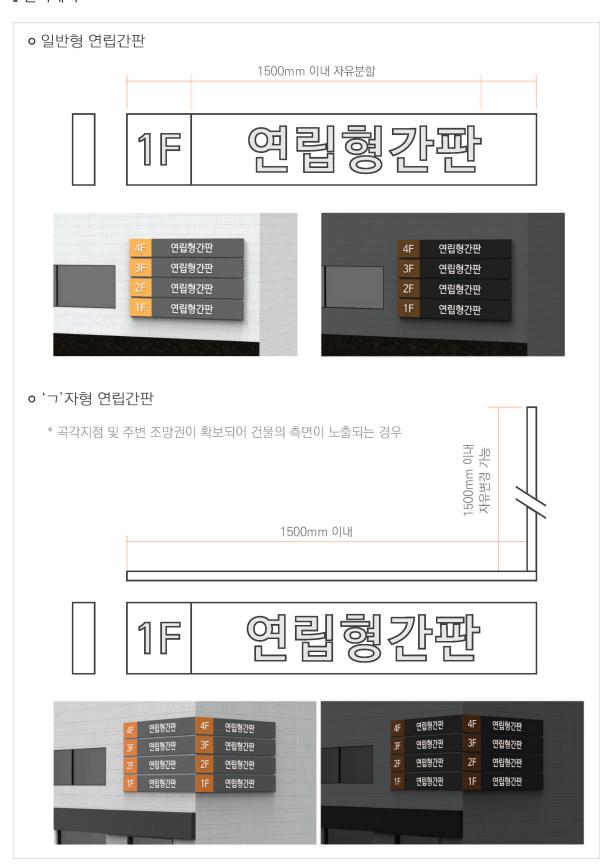
## ▋설계지침

\*별도 표기 없는 치수단위: mm



# 연립형 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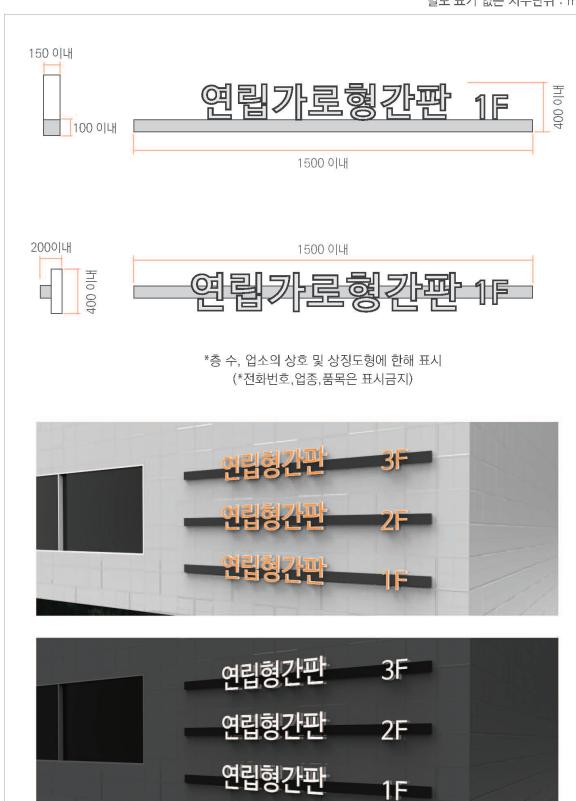
## ▋설치예시



# 연립형 간판

## ▮ 가로형 조인트바 활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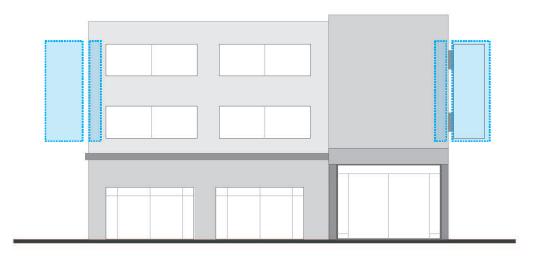
\*별도 표기 없는 치수단위: mm



공주시 옥외광고물 표준 가이드라인

# 4-1광고유형별 가이드라인 및 디자인

# ▋돌출간판



규정항목	지침내용
기본원칙	<ul> <li>· 간판의 정량적 규제와 방법을 통해 가로경관을 정비</li> <li>· 가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광고물 간 질서가 형성되도록 디자인</li> <li>· 부착되는 건물들, 주변간판, 거리 분위기와 조화로운 디자인으로 계획</li> </ul>
필수사항	<ul> <li>보행자의 안전성, 수량, 크기의 최소화, 가독성, 조화성 고려</li> <li>업소 개별의 차원이 아닌 건물 전체의 차원에서 질서 있는 디자인으로 계획</li> <li>통행의 안전을 위해 지면으로부터 3m 이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li> <li>한 건물 내에서는 일정 규격으로 통일되게 돌출시켜 표시</li> <li>돌출간판의 구조체는 개별간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제작</li> </ul>
금지사항	· 점포주택의 주거부분으로 쓰이는 해당 층에는 설치금지 · 의료기관 또는 약국, 이·미용업소 표지등 외 건축물 높이를 초과한 설치 금지
수량	· 1개(2~5층 업소로 1층은 제외)
형 식 및 규격	<ul> <li>· 규 격 : 폭 1000mm x 1000mm x 두께 300mm 이내 폭 1000mm x 1,500mm x 두께 300mm 이내</li> <li>· 돌 출 : 1m 이내</li> <li>· 이격거리 : 돌출간판 간 이격거리가 20m 미만 1열, 20m 이상 양끝에 2열 (건물 중간에 설치불가. 최대 2열)</li> <li>· 주 표기내용은 간판면적의 70% 이내로 표시</li> </ul>
조 명	・매입하여 사용하거나 외부 간접조명 사용. 광원노출 금지. 점멸방식 금지
색 상	· 색상 활용은 업종 및 지역에 따라 개성있게 사용하되, 고체도의 원색 (채도 12~14인 적,노랑 계열)은 강조색 제한
주민참여	· 주민 협의에 따라 패널면적 분할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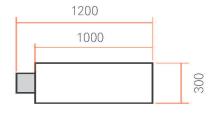
# 돌출 간판

# ▋설계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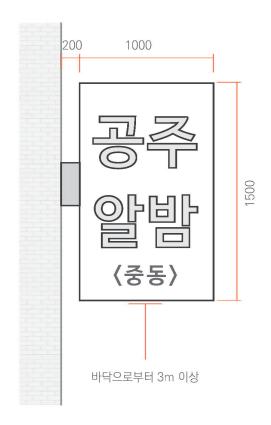
\*별도 표기 없는 치수단위: mm

\*인도에 접했거나 여유 공간이 있는 건물로 차도에 직접 접한 건물은 설치불가

o Top View



Front View



o 표기내용

공주시 옥외광고물 표준 가이드라인



**심볼 및 로고** 한종류만 사용



**주 표기 내용** 간판면적의 70%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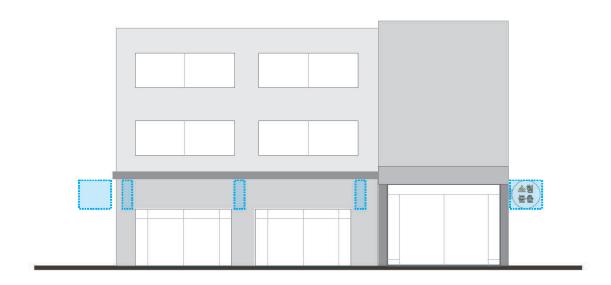
**보조 표기 내용** 간판면적의 15% 이내

독립형 간판 - 1500mm 이내

\*대형간판 - 건물 최상층 바닥면부터 하단 2층 바닥면까지

# 돌출 간판

# ▲소형돌출간판



규정항목	지침내용		
대 상	· 1층 업소 중 보행로에서 직접 출입하고 1개 이하의 간판이 설치된 업소 (*도로면에서 직접 출입하는(보행로가 없는) 업소는 설치금지		
수 량	· 17H		
형 식 및 규격	<ul> <li>규 격: 600mm x 600mm 이내 (사각이 아닌 형태도 규격 동일, 부착 앵커나 걸개 등은 규격에서 제외)</li> <li>· 두 께: 200mm 이내</li> <li>· 돌 출: 벽면에서 800mm 이내(앵커돌출 포함)</li> <li>· 높 이: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li> <li>· 보행에 지장이 없는 높이에 설치</li> <li>· 같은 건물 내에서는 부착 방향 및 높이 등이 통일되도록 권장</li> <li>· 소형돌출간판을 설치한 업소는 돌출간판 설치 금지</li> <li>· 간판 개념 보다는 업소를 상징하는 조형물로 조성</li> </ul>		
조 명	・매입하여 사용하거나 외부 간접조명 사용. 광원노출 금지. 점멸방식 금지		
색 상	ㆍ색상 활용은 업종 및 지역에 따라 개성있게 사용하되, 고체도의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주민참여	· 총 면적 기준으로 주민협의에 따라 자율적인 디자인 가능 · 1층 업소 좌·우 경계면 안쪽(건물별 방향의 통일)		

# 돌출 간판

### ▋설치예시

\*별도 표기 없는 치수단위: mm



# 4-1광고유형별 가이드라인 및 디 자인

# ▮지주 이용 간판

규정항목	지침내용		
대 상	· 5층 이상 건물로 5개 이상의 업소가 해당 건물의 부지가 있는 경우 · 연립가로형간판이 설치된 업소는 설치불가 *인증간판제작업소 제작. 심의 허가 대상		
기본원칙	<ul> <li>가로 환경의 개방감을 고려하여 시각적 부담감을 최소화</li> <li>보행자의 통행과 안전을 우선시하여 디자인</li> <li>상호명을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표기로 가독성 및 조화성을 고려</li> <li>공공정보외 지주형 간판은 가급적 설치 자제</li> </ul>		
필수사항	<ul> <li>단순하고 간결한 내용으로 구성</li> <li>여러업소를 표시 하는 경우 하나의 지주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li> <li>가로 환경의 개방감을 고려하여 시각적 부담감 최소화</li> <li>연립형의 지주형 간판은 개별 간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모듈형으로 디자인</li> </ul>		
금지사항	<ul> <li>입간판, 깃발형, 에어라이트 등 유동 광고물 설치 금지</li> <li>네온사인, 점멸형 옥외광고물, 형광도료, 야광도료, 유연성 원단 (플렉스)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사용을 금지</li> <li>화면전환방식 금지</li> <li>조형물 형태는 금지하고 사인 형태만 허용</li> </ul>		
수 량	· 건물당 1개		
형 식 및 규격	<ul> <li>건물 외부 마감재와 조화되도록 사용하며 친환경소재를 권장</li> <li>출입구, 건물 모서리로 도로 경계선에서 이격 (도로경계선으로부터 보도 1m 이상, 보도가 없는 경우 차도로부터 2m 이상)</li> <li>규 격: 가로 1m x 높이 5m 이내 x 두께 500mm 이내 (입점업소의 수 및 면적에 따라 분할)</li> <li>표기내용: 건물명, 층 수, 상호 및 도형(전화번호, 업종은 표기금지)</li> <li>최소한의 정보만 표기하며, 글씨 크기는 개별 간판 높이의 50%로 표기</li> <li>연립형은 층수표시나 업종의 로고·심볼 등은 각 광고물의 동일한 위치에 표기</li> </ul>		
조 명	· 광원노출 금지. 점멸방식 금지		
색 상	· 지주는 무광처리하고, 저채도의 색으로 마감 · 간판의 바탕색은 주변 건물의 외장색채를 고려하여 동일한 재료와 색채로 통일 · 연립형으로 설치되는 개별 간판 베이스판은 동일한 재료와 색채를 적용한다.		
주민참여	· 주민협의에 따라 통일된 색의 패널 및 면적 배분하여 설치가능 · 총면적 기준으로 주민협의에 따라 자율적인 디자인 가능		

# 지주 이용 간판

#### ▋설계지침



# 4-1광고유형별 가이드라인 및 디자인

# ▮ 창문 이용 광고물

	7171110			
규정항목	지침내용			
기본원칙	<ul> <li>가독성 및 조화성을 고려하여 건축물 및 내부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고 상호명을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과 정보를 표기</li> <li>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서체와 시각적 개방감을 고려한 여백 확보</li> <li>건축물 및 내부 이미지와 조화. 상호를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과 정보로 표기</li> </ul>			
필수사항	<ul> <li>업종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 입면 디자인과 조화로운 색채와 그래픽으로 디자인한다.</li> <li>최소한의 면적으로 도형이나 기호를 사용하여 업종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li> </ul>			
금지사항	<ul> <li>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의 광고내용 (성명, 상호, 상표, 전화번호, 영업내용)과 관련없는 내용, 실물 사진의 이미지 사용을 금지</li> <li>입체형, 전광류, 창문 전면을 모두 덮는 방식 금지</li> <li>창문 또는 출입문 내부에서 간판으로 인지될 수 있는 표시물 설치 금지</li> </ul>			
형 식 및 규 격	<ul> <li>해당 업소 상호 및 업종 등을 표시하는 '공고부분'과 건물 내·외부를 차단하거나 미관 증진을 위해 해당 업종과 직접 관련 없는 패턴 등을 무채색으로 사용하는 '차단부분'으로 구분</li> <li>1층 이하(1~2층)의 유리창 및 출입문에 표시가능(유리로 된 모든 면에 표시가능)</li> <li>· 공용 출입문 및 계단실 유리 등에는 띠로 표시가능(개별 업소의 표시 불가)</li> </ul>			
표시내용	<ul> <li>◈ 광고부분의 표시 방법</li> <li>원형, 사각형 등 다양한 형태로 표시하거나 띠 형태로 표시 가능</li> <li>입체물 및 LED 등 디지털방식의 표시물은 내부에 설치</li> <li>· 규 격 : 광고부분의 밀부분을 기준으로 유리 바닥면에서 120cm 이내에 표시 -형태로 표시할 경우 충별 각 면의 총면적은 0.4㎡ -띠로 표시하는 경우 높이는 20cm, 폭은 점포의 유리면 규격 까지 표시</li> <li>· 색 상 : 사용색상에는 별도 표시된 금지색 제외 지정색상 2가지 색상(바탕색+문자색)의 사용을 원칙으로하고 0.1㎡ 이내 또는 해당 점포 폭의 1/5 면적에는 심벌 마크 등 여러 색상을 사용 가능 (*금지색 : 채도 12이상의 적색, 청색, 황색, 또는 흑색)</li> <li>· 상호, 업종, 취급품목,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심벌 등을 표시 사진 및 이미지의 실사 표현은 표시불가</li> <li>◈ 입체 및 디지털방식의 표시 방법</li> <li>· 규격 : 높이 200mm x 해당 점포 유리부분 폭의 1/2 이내(최대 폭 200 이하)</li> <li>· 컬러시트 등의 외부 표시와 업체 및 디지털방식 표시 중 한 가지 유형만 표시</li> <li>◈ 차단부분의 표시방법</li> <li>· 광고부분 하단부에 백색 등 무채색의 시트를 이용하여 차단할 수 있다</li> <li>· 표시내용은 업소 상호 및 업종과 관련이 없는 문양, 타이포그라피 등에 한함</li> </ul>			

# 창문 이용 광고물

### ▋설치예시

\*창문이용광고의 사용 색상은 공주 CI색상을 기준으로 최대 2가지 색상조합으로 제한

• 1층 유리창 적용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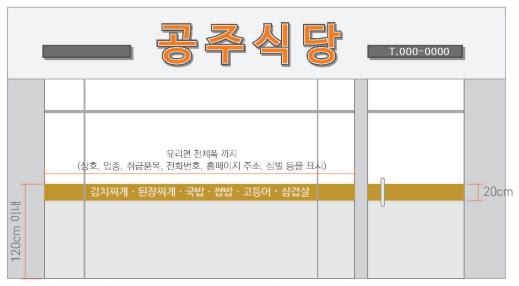


공주시 옥외광고물 표준 가이드라인

• 2층 유리창 적용 지침



• 적용예시



\* 광고부분 하단부에 백색 등 무채색의 시트를 이용하여 차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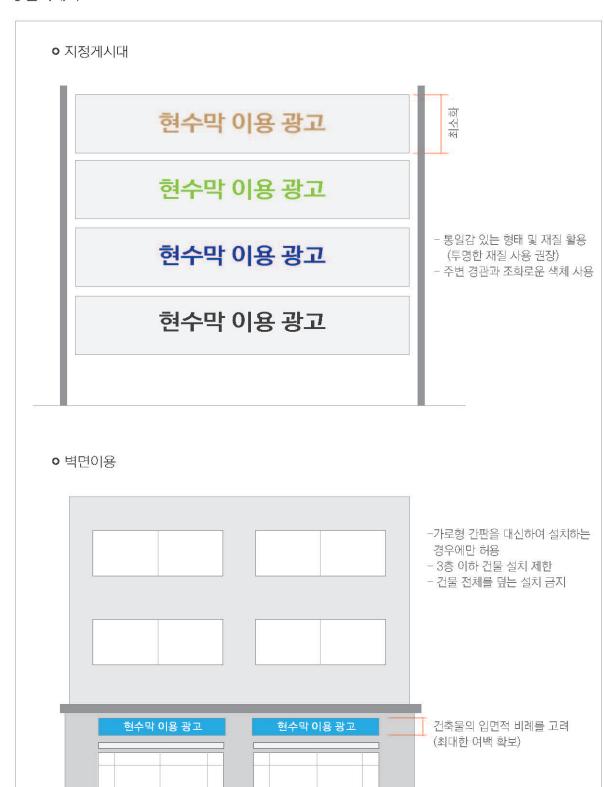
# 4-1광고유형별 가이드라인 및 디자인

# ▋현수막 이용 광고물

규정항목	지침내용			
기본원칙	<ul> <li>주변 환경색채를 고려한 조화로운 디자인으로 주변 경관과 연속성을 고려</li> <li>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서체와 시각적 개방감을 고려하고 여백을 확보</li> <li>광고물 내의 문자, 도형, 기타 내용이 복잡하지 않도록 정보 위계를 표현</li> </ul>			
필수사항	· 차폐 경관을 형성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설치 · 도시경관과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현수막 크기, 색채 사용 계획			
금지사항	<ul> <li>무분별한 중복 설치와 전봇대나 나무에 매달아 가로경관을 훼손하는 설치 금지</li> <li>벽면이용 현수막은 건물 전체를 덮는 설치와 3층 이하 건물에 설치를 금지</li> <li>지정게시대 및 지주이용 현수막은 주변경관을 차폐하는 과도한 크기를 금지</li> <li>통행을 방해하거나 기타 표기시설을 가리는 설치는 금지</li> </ul>			
형 식 및 규 격	<ul> <li>지정게시대의 현수막은 배후경관이 투영되도록 세로폭 최소화</li> <li>병면이용 현수막은 건축물 입면적의 비례를 고려하여 최대한의 여백 확보</li> <li>지주이용 현수막은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면적 사용</li> <li>한시적으로 설치되는 현수막은 건축물 입면과 조화성을 고려하여 설치</li> <li>지정게시대와 지주 이용 시 교통,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li> <li>병면 이용 현수막은 업소 상단 가로형 간판을 대신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하</li> </ul>			
표기요소	· 정보의 위계를 반영하여 주요 정보는 크게, 기타 정보는 최소한의 크기로 표현 · 충분한 여백을 확보하고 행사 내용, 일자 등 광고 내용 최소화			
재질 / 색채	<ul> <li>특화거리의 경우, 거리별 특성과 통일감을 나타낼 수 있는 색채와 재료로 가로의 개성을 표현</li> <li>지정 게시대 및 지주 이용 현수막은 투명한 재료를 사용하여 시야를 확보</li> <li>고채도 원색을 문자에 사용할 때에는 강조하는 포인트 요소로 적용 가능</li> <li>연립형 현수막은 연접해 설치된 현수막 색채와 보색대비가 되지 않도록 색채 사용</li> <li>원색 및 고채도의 돌출색 사용을 지양하고 설치 장소와 조화로운 색채 사용</li> </ul>			

# 현수막 이용 광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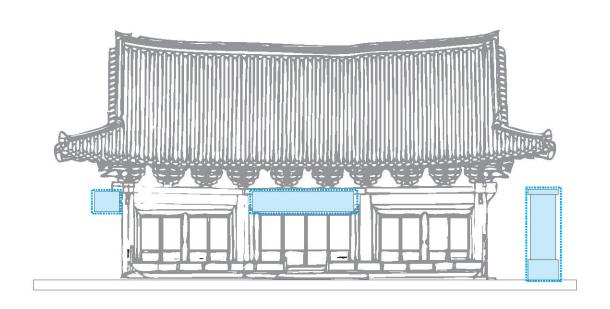
### ▋설치예시



# 4.공주시 옥외광고물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 4-2한옥의 간판 가이드라인

▮ 한옥(전통건축물)의 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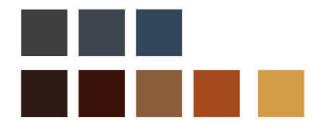


규정항목	지침내용	
기본원칙	<ul> <li>상호명을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 표기로 가독성 및 시각적 개방감 확보</li> <li>건축물의 입면특성 및 건축적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배치</li> <li>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서체와 시각적 개방감을 고려한 여백 확보로 깨끗하고 정리된 가로 이미지를 연출</li> </ul>	
필수사항	<ul> <li>조형성과 시각적 포인트를 부각시켜 건축입면의 디자인 요소로 표현</li> <li>경관지구 전통건축물의 옥외광고물 색채에는 기와와 토담, 자연소재인 나무색채와 대비되어 자극되는 색채를 사용할 수 없음</li> <li>전통건축물에서 가로형 간판 설치시 한옥의 처마구조를 최대한 가리지 않도록 함</li> <li>건축물의 조형성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도록 최소화하여 설치</li> <li>전통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치</li> </ul>	
금지사항	<ul> <li>전통건축물에서 옥외광고물의 모든 문자를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은 금지</li> <li>어닝에는 높이 50mm 이내의 업소명 1개외 표기금지 (업소당 총 1개 표기만 허용)</li> <li>전통건축물의 현수막, X밴드 광고물 등 1회용 옥외광고물은 1업소당 1개로 제한</li> <li>전통건축물의 1회용 옥외광고물은 원색을 사용할 수 없다</li> <li>*단, 전체 면적의 1/10 이내에서 포인트컬러를 사용 가능</li> </ul>	

규정항목	지침내용		
수 량	· 업소당 간판 유형별 각 1개(곡각지점 및 출입구가 앞뒤 도로에 접한 업소는 1개 추가) *곡각지점, 앞뒤도로 모두 접한 업소는 2개의 조건 중 1개 선택		
형및구	<ul> <li>건축물의 훼손을 줄이고 한옥의 분위기를 그대로 살릴 수 있도록 규격을 최소화</li> <li>한옥의 특성을 잘 부각시킬 수 있는 소재 사용 권장 (원목소재 / 부식철판 / 아크릴 등)</li> <li>한옥의 간판은 아래의 3가지 유형만 사용할것을 권장</li> <li>↑ 가로너비: 기둥과 기둥 사이, 최대 3m 이내 (한옥의 크기나 형태에 따라 그 조형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li> <li>나 세로높이: 지붕 하단면을 넘지 않으며, 700m 이내</li> <li>· 두 께: 벽면으로부터 200m 이내</li> <li>◆ 돌출간판</li> <li>・ 돌출간판은 소형돌출만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형태는 자유롭되 형식 및 규격은 본 책자 소형돌출간판 가이드라인 형식을 따른다</li> <li>・ 지붕 하단선을 넘지 않으며, 벽면에 밀착하여 한옥과 일체감을 가지도록 설치 권장</li> <li>・ 건출물의 양 끝 기둥에 설치권장(불가피할 경우 가로형 간판의 좌,우측면에 설치 지양)</li> <li>◆ 지주이용간판</li> <li>・ 규격: 가로 800mm 이내 x 세로높이 3m 이내 x 두께 500mm 이내 *높이는 한옥의 1층 높이 권장. 최대 3m</li> <li>*유형별 간판의 최대 규격과 한옥의 조형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디자인 및 규격 설정가능</li> </ul>		
조 명	<ul> <li>한옥건축물의 구조상 조명사용이 가능한 건물의 경우 에너지절약형 LED 채널문자를 활용</li> <li>매입하여 사용하거나 외부 간접조명 사용. 광원노출 금지. 점멸방식 금지</li> <li>조명의 유지 및 보수가 용이한 재료 및 시공방법 적용</li> </ul>		
색 상	· 원목계열의 주재료와 조화를 이루는 색상 사용 권장 · 고채도 원색계열의 색상사용을 제한하며, 모노톤 계열의 색상 사용 권장		
보조표기 내용	- 주요 표기내용의 25% 크기 이내로 표기		
주민참여	· 구획별 주민협의에 따라 간판의 색상 및 위치를 통일하여 설치가능 · 총면적 기준으로 주민협의에 따라 자율적인 디자인 가능		

# 한옥 간판 색상 가이드라인

### ▮한옥(전통건축물) 구성 색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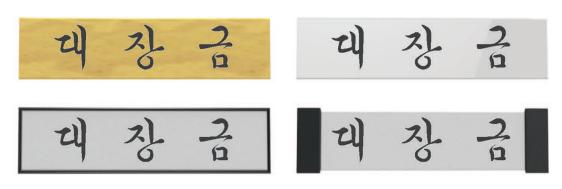


### ▮한옥(전통건축물) 간판문구 적용색상



#### ■적용예시

\*한옥(전통건축물)의 경우 아래의 색상 이외에 불필요한 색상 사용은 제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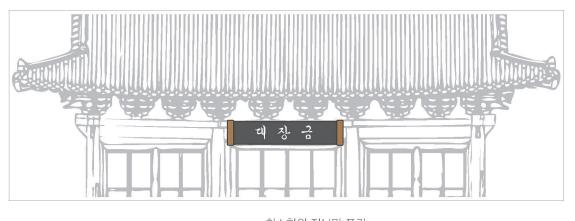


- 원목, 아크릴 등 밝은색 재질의 경우 검정색 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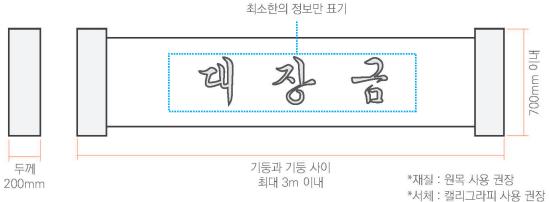


- 부식철판, 대리석 등 어두운색 재질의 경우 하얀색 글씨

### ▮ 한옥(전통건축물) 벽면이용간판 설치예시



공주시 옥외광고물 표준 가이드라인



### ▮ 한옥(전통건축물) 벽면이용간판 설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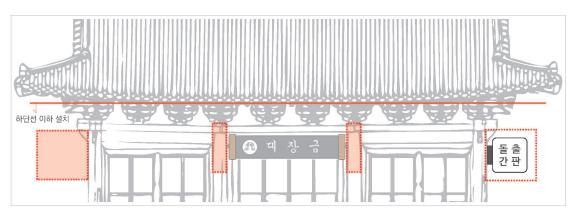








### ▮ 한옥(전통건축물) 소형돌출간판 설치예시



- · 지붕의 하단선을 넘지 않고, 건물의 양끝 기둥 혹은 가로형 간판의 좌·우측면에 설치
- 한옥과 어울리는 재료의 사용을 권장(원목/부식철판/아크릴 등)
- ㆍ 색상은 고채도의 원색계열을 제한하고 차분한 느낌의 저채도 계열의 색상 사용 권장
- ㆍ 형태의 제한은 없으나 규격은 본 책자의 소형돌출간판 가이드라인 지침을 준용

### ▮ 한옥(전통건축물) 소형돌출간판 설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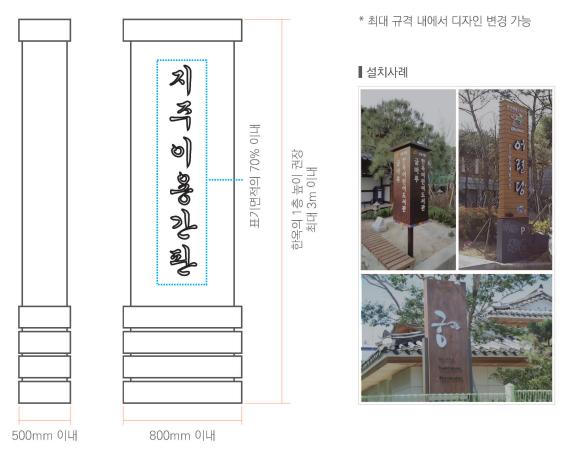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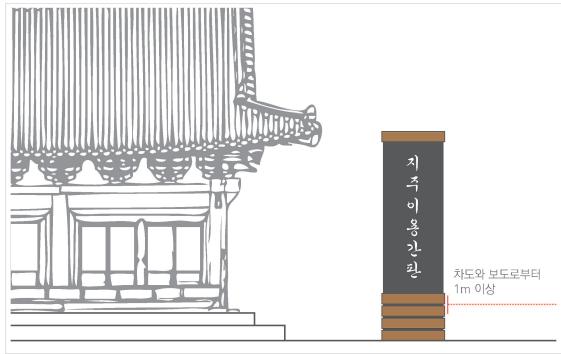






# ▮ 한옥(전통건축물) 지주이용간판 설치예시





# 4-3 광고물 심의기준 및 체크리스트

- · 본 심사평가표는 공주시 옥외광고물의 효과적 유지 · 관리를 위한 심의 체크리스트로 활용
- · 평가기준 권역별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심의평가에서 3개 이상의 불량 판정을 받을 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심의 절차를 거침

구분	평가내용	평가		
TE	8/14/16	우수	보통	불량
규격	· 간판의 규격이 권역별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는가?			
	· 동일 건축물내 광고물의 규격이 통일되었는가?			
표기내용	가독성이 떨어지는 글자체로 계획되지 않았는가?			
	표기내용이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가?			
	· 지나치게 많은 표기내용이 계획되지 않았는가?			
	· 자간 및 장평의 변형으로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서위	· 간판의 설치위치가 기준에 맞게 되었는가?			
설치	· 간판 설치를 위한 구조물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지 않은가?			
	·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로 계획되었는가?			
색채	· 건축물과 조화로운 재질이 사용되었는가?			
	· 표기내용 및 전체 배색이 가시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는가?			
	자간 및 장평의 변형으로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재질	·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건축물과 조화로운 재질을 사용하였는가?			
	· 파손 및 변색에 강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조명	· 표기내용을 가독하기에 적당한 휘도로 계획 되었는가?			
	효율성이 높은 조명소재가 적용되었는가?			

# 5.사후 관리방안

### 표준가이드라인 사후 관리방안

- 1. 유지 및 관리 전략
  - 전문가와 행정기관, 주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통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

#### 2. 협력체계의 구축

- · 옥외광고물의 지속적 관리와 계획을 위해 관련부서와의 협력체계 및 지원 체계를 구축
- ·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그룹을 통해 가로경관 및디자인에 대한 자문문의
- 주민 참여 및 실행의 효율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도입

#### 3. 심의 제도의 도입

· 옥외광고물의 디자인 심의를 통해 지역과 경관이 고려된 디자인을 유도하고 도시디자인 측면에서의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검토 및 계획

#### 4.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제

- ·업주가 간판을 가이드라인에 맞춰 공주시 관련부서에 사전에 허가(신고)를 받고 제작, 설치하는 제도로 신규 점포 및 상호 및 업종을 변경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해당업종의 관련부서가 간판심의를 연계하는 시스템
- ① 신규점포계약 또는 업종 및 상호변경 시 옥외광고물 허가를 받기 위해 심사를 신청해야 함
- ② 간판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선 관련부서에 해당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서류를 접수할때 심의 받고자 하는 옥외광고물은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함
- ④ 해당업무 담당자는 접수된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를 확인 및 검토함
- ⑤ 심의위원은 접수된 옥외광고물을 심의 및 검토한다. 단, 기준에 벗어났을때 심의탈락 할 수 있으면 다시 심의신청을 하여야 함
- ⑥ 심의가 통가되면 허가증을 발급받아 제작 설치함

